

# 농촌 진흥법 개정

윤 여 학

창녕군 농촌지도소

## Reform of Rural Development Acts

Yeo Hak Yoon

Chang Nyung County Rural Guidance Office

### Summary

Extension service in Korean has radical institutional changes since Febuary, 1991. In new code of local government rules the county extension office is a par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extension service is committed to local government. This is resulted from the dilemma of rural development's acts.

##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일선 농촌지도사업이 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맞고 있다. 그 원인이 농촌진흥청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도사업의 학문적 이론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도 더더욱 아니다. 또한 고차원의 정치적 결단의 산물도 아니고 농민들의 열화같은 집단요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1947년에 도입되어 과도 정부 농업기술 교육령에 근거를 두고 출범한 미국식 농사 교도 사업이 우리나라 행정 질서에 적응하여 정착하기란 매우 힘들었고 농촌지도 업무는 국가가 인정하는 시책기능이지만 우리나라 행정 풍토에서 공감하고 인정받기란 더욱 어려웠다 하겠다. 우리나라 행정제도하에 아무리 훌륭한 학문적/이론적으로 성립된 국가 시책이라 하더라도 법제도적 뒷받침 없이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30여년간 도농촌진흥원과 시군농촌지도소가 농촌지도사업을 국가 사무로 국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일선 지도직 공무원들은 열

심히 근무한 바 있다. 그러나 1991년 1월말까지 농촌지도소가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행세하였으나 1991년 2월 1일을 기해 지방 자치법에 의거 지방 자치 단체의 소속기관으로 법적 성격이 변화되었다. 1993년 7월에는 내무부 장관이 농정의 원활화를 기하여 자치단체 소속기관을 이유로 시군농촌지도소 직제조정에 따른 농촌지도소 문제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내무부에 보고토록 한 바 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의 일부조항 개정으로 예고없이 닦친 제도적 문제는 도농촌진흥원과 시군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임을 재확인하였고, 근간 총무처에서 발표되는 지상보도에 의하면 지방 이양사업에 농촌지도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국가직 지도 공무원이 지방직 지도공무원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소위 지방화란 대세에 밀려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촌지도사업, 농촌지도기구, 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법의 자체 모순에서 연유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농촌지도소가 직제상 농촌진흥청 소속기관도 아니며 도농촌진흥원 소속기관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농촌지도기관이 지난날 지도사업적 측면보다 타의에 의한 법제도적 변화 때문에 잃은 것이 많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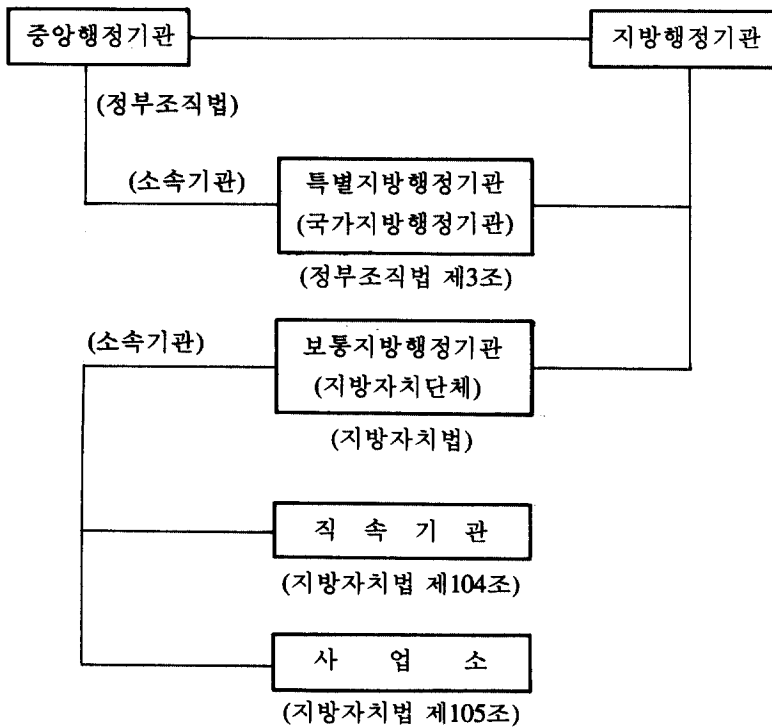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시군농촌지도소가 직접 상명하복의 기관 계층체계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지도사업이 시험 연구사업과 직접 연계 추진되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사업 원리에 타격이 예상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농촌진흥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법의 자체 모순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코저 한다

## II. 본 론

### 1. 우리나라 행정조직

우리나라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이다. 이는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을 나타낸다. 정부조직에 관한 일반법은 “정부조직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서 농촌진흥법, 감사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등이 있다.

가. 우리나라 행정조직체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나. 소속기관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

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 교육기관,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 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의 정원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행정기관 권한의 감독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며 그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제적 작용을 권한의 감독 또는 행정감독이라 한다. 또 행정관청은 상명하복의 기관계층체계를 구성하여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국가의사의 통일적 실현을 기하는 점에서 입법조직이나 사법조직과 구별된다.

2. 농촌지도 기능에 대한 문제점

1993년 9월 제 3기관에서 제시된 농촌지도 기능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도 기

능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둘째, 시군, 농협등의 기구(기능)와 유통, 특화작목, 농기계, 농민교육 등에서 중복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행정기관대비, 조직체계가 상이하며, 넷째, 인사, 예산 문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집행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3. 농촌진흥법 입법과 개정된 조항

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농촌진흥사업)의 성격

정부조직법 제36조 ①항은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동법 제36조 ③항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장관과 외청과의 관계는 장관훈령으로 별도 규정 제정된다. 농촌진흥법 제5조에서는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 수련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입법취지

농사연구교도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던 농사시험 및 지도사업과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로하고 신설되는 농촌진흥기구에 이 사무에 관련되는 사업과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관 계승토록 하였다.

농 사 교 도 법 (법률 제435호 54. 2. 12)	농사연구교도법 (법률 제742호 61. 10. 2)	농 촌 진 흥 법 (법률 제1319호 92. 3. 21)
일반행정에서 완전분리	일반행정기관에 통합	지방 농촌진흥기구는 자치단체 소속하에(2원화) 둠

다. 주요법조항

농촌진흥법 부칙 ⑥ 경과조치는 '이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농사원, 농림부 지역사회국,

농림부훈련원의 사업, 공무원 및 시설은 농촌진흥청이 도 농사원, 도 산업국지역사회과 및 도의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 수련사업을 담당하

는 일체의 기관의 사업, 공무원 및 시설은 도 농촌진흥원이 서울특별시, 시, 군의 농사교도와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공무원 및 시설은 당해 농촌지도소가 각각 승계한다'이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 수련사업으로 구분 국가사무로 규정하며, 제 2, 3, 4조에서는 중앙에 농촌진흥청을 설치하며, 도에는 농촌진흥원, 시·군에는 농촌지도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를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하에 두었다. 제7조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며,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와 제 10조에서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은 연구 및 지도사업이외의 사업참여 불허하고, 연구 및 지도사업비 보조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라. 개정된 농촌진흥법 조항 및 제정된 관련 법규정

개정된 법조항을 보면, 동법 제10조에서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규정(1966. 12. 27, 대통령훈령 제9호)하였다. 그리고 법률 제2437호(73. 1. 15)에 의거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농촌진흥법 제3조, 제4조를 삭제(제2조 농촌진흥청 78. 12. 5 삭제)하였으며, 정부조직법 부칙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법 제3조, 제4조 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경과조치하였다.

제정된 관련 법규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의거 지방농촌진흥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808호 73. 8. 16)을 제정공포하여 지방농촌진흥기구는 합법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었다.

4. 농촌진흥법 자체 모습

농촌진흥법 제3조, 제4조에서 농촌진흥기구가 일반행정기관(자치단체)으로 부터 분리 독립

되면서 동법에 도지사,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사업을 실시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 지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 10조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성격과 지방농촌진흥사업의 성격이 모호하게 되었다. 심지어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둠으로서 시장군수의 행정감독을 받을 수 있고, 한편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원의 계통 상급기관의 기술감독을 받을 수 있어서 지방행정과 협동적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어처구니 없는) 견해도 있다

5. 농촌진흥법 모순으로 인한 결과

가. “농촌지도소를 시장군수 소속하에 둔다.”라는 조항

60년대 한때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근무하는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었다. 도농촌진흥원에 총무과를 두고 총무과에 두는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다. 지방 농촌진흥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폐기되고 지방 자치법 제102조에 의한 도단위 자치기구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75호 91. 2. 1)이 제정되면서 동규정 제6조, 제7조에 지방 농촌진흥기구 설치규정이 옮겨 규정되었다. 1993.7. 내무부에서 위규정에 근거하여 지방 농촌진흥기구(농촌지도소)를 자치 기구로 인정하고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을 시군직제규칙에 흡수통합시킨 바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농촌지도사업 실시기관으로 규정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도사업 소요국고보

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고, 따라서 농촌 지도사업 소요경비 전액이 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된다. 지도사업 소요예산의 편성권은 시장군수가 관장하고 예산의 심의 및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에서 관장하게 되었다(지방자치법). 농촌지도소장은 시장군수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간부회의 참석)하게 되고 지도소 전직원이 군수가 주재하는 월례조회에 참석 내무공무원의 입장에서 혼시를 듣게 되었다. 한편 시군정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동원에 농촌지도소, 지도공무원이 빠질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시군 농촌지도소와 지도공무원은 농촌진흥법 아닌 지방자치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망

지방 농촌진흥기구에 근무하는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 공무원으로 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인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 문제와 이들의 지방직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동법 제103조 제5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직 및 지도직(국가 및 지방직)의 인사권이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될 것이다.

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권한 감독관계

하급관청에 대한 감독기능을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소속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관계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이다(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항). 한편 이들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지도사, 연구사, 지도관 일부)을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재

위임하여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무관하다 하겠다. 도 농촌진흥원 총무과 행정직 인사권 도지사 직접 행사한다.

(2) 재정권

지방에서 실시되는 농촌진흥사업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되고 지방비가 부담되어 예산전액이 자치단체예산에 편성운영됨으로서 사실, 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고 있다

(3) 감사권

행정감독기능의 하나인 감사권에 있어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농촌진흥청장의 감사권은 없다 하겠다(직제상 소속기관이 아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농촌진흥원장의 감사권도 없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이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업이 아니라 하여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지원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의회에서 지도사업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이상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권은 행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대한 행정감독은 2원화 되어 있고, 사업 감독 즉 기술감독을 한다는 농촌진흥청도 인사권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선 농촌지도사업은 변질할 수 밖에 없었다.

6. 농촌진흥법 개정 방향

가. 기본골격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하며, 지방농촌진흥사업도 국가(비)사업으로 존속시킨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국가부담으로 하며, 그 소속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존속시킨다.

나. 현재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농촌진흥기구는 지방자치법 규제에

의해 지방자치기구가 되며, 지방농촌진흥사업의 소요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자치단체예산에 전액편성되어 자치사업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소속연구 및 지도공무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직화되어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고, 연구 및 지도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다면 지방농촌 진흥기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방자치기구로서 존속되고 국가사업인 농촌지도사업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될 것이다.

다. 소속기관 성격변경사례

(1) 보건소

1973. 1. 15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동법 부칙 ⑥에 의거 보건소법 제2조가 삭제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결과조치 되었다가 그후 보건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됨 (부록 : 보건소법 동법 시행령 참조)

(2) 국립농산물검사소

1973. 1. 15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산물검사법 제4조가 삭제되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으로 경과조치 되었다가 농림수산부와 소속기관직제규칙(대통령령)에 의거 농림수산부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존속되고 있다. (부록 : 농산물검사법, 농림수산부 직제규칙 참조)

Ⅲ. 결 론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제도하에서 30여년이란 오랜 세월, 시장군수 소속하에서 운영된 농촌지도소의 경우 거의 완전한 자치단체 사업소로 만족하고, 농촌지도 사업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해석되어, 질보다 양에 치중되고 기술의 파급효과보다 당해년도 사업완료를 평가기준으로 하는 행정적 지도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지도공무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법은 법자체의 모순과 이 모순에서 연유되어 제정된 새로운 법규정이 시행됨으로써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하겠다. 새롭고 참다운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지도사업이 시험연구사업, 수련사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가사업으로서 존속되고 국가기관이 관장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요구된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슬(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서 벗어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으나 전국에 방대한 지방농촌진흥기구(진흥원, 지도소, 상담소)를 소속하에 둔 농촌진흥청은 필연적인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부록 1~8】참고

**[부록 1]**

**농촌진흥기구 변천과정**

관 련 법 규	기 구 명 칭			비 고
	중 앙	도	시 군	
• 농사기술교육령 (과도 정부령 제160호 1947. 12. 15)	• 농사개량원 (농과대학 편입)	• 도농사시협장 • 도지방교육국 (도지방농사교도국)	• 군농사교도소	•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됨
• 농업기술원 직제 (대통령령 제45호 1949. 1. 6)	중앙농업기술원	• 도농업기술원	• 군농사교도소 (폐지)	• 군읍면에 모범포 설치
	<교도사업관장> • 1950. 12 농림부 농업경제과	• 도청 농무과	• 시군 산업과	• 1951 교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
	• 1956. 3 농림부 농업교도과 농업기술원 교도부	• 도청 산업국 교도과	• 시군 산업과 (교도계)	• 중앙 이원화, 지방은 자치단체 관장
• 농사교도법 (법률 제435호 1957. 2. 12)	• 농사원 (직제 대통령령)	• 도농사원	• 시군 농사교도소	• 일반행정과 분리됨 <한미협정> - 법률에 의한 기구설치 - 명백한 행정체계 수립 - 비정치적으로 훈련 받은 인재배치
• 농사연구교도법 (개정법률) (법률 제742호 1961. 10. 2)	• 농사원	• 도농사원 (도지사 직속)	• 시군 산업과 (교도계)	• 직제개편 다시 행정기관에서 장악 (농사연구교도법 제 5조)
• 농촌진흥법 (법률 제1319호 1992. 3. 21)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부장관 소속하의 외청) • 정부조직법	• 농촌진흥원 (도지사 소속하에 둠)	• 농촌지도소 (시장 군수 소속하에 둠)	•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발족 • 실체는 행정기관(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되었음.

**【부록 2】**

**농 촌 진 흥 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농촌의 진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계몽지도, 기술의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지도자의 양성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66. 12. 27>

제 2 조 삭제 <78. 12. 5>

제 3 조 및 제 4 조 삭제 <73. 1. 15>

제 5 조 (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시험연구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66. 12. 27, 69. 8. 4>

1. 농사기술(농업, 축산, 가축위생, 원예, 잡업, 농축산물의 이용, 가공, 농공)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연구
2. 농촌생활(의, 식, 주)의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3. 농사의 기본이 되는 우량작물, 채소종자와 원원종, 원종과 잡종, 우량과수의 묘목, 상묘 및 가축전염병예방약의 생산
4.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이 법에서 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66. 12. 27>

1.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시보급 또는 실지전시
2.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보급
3.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에 유용한 자연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농민교육
4.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조직의 육성
5. 농민의 자력 또는 보조에 의한 시범농촌건설사업의 조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이 관련된 업무

③이 법에서 “수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78. 12. 5>

1. 시험연구사업·지도사업 및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련
2. 농업관계공무원 및 단체요원에 대한 영농기술수련
3. 농업산학협동에 의한 농과계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실기수련
4. 농민·농촌청소년과 농촌부녀자에 대한 영농 및 생활기술수련
5.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수련

제 6 조 (사업의 실시)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임업에 관한 지도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66. 12. 27>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66. 12. 27>

③제2항 이외의 단체가 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71. 1. 14>

제 7 조 (연구 지도공무원) ①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을 둔다.

②연구공무원이라 함은 시험연구사업 또는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기술계공무원을 말한다.

③지도공무원이라 함은 지도사업 또는 수련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8. 12. 5>

제 8 조 (자격) ①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용학술을 이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66. 12. 27>

②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8. 12. 5>

③ 내지 ⑤삭제 <78. 12. 5>

제 9 조 (복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에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66. 12. 27>

제10조 (조성금과 보조금) 정부는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성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66. 12. 27>

제10조의 2 삭제 <78. 12. 5>

제10조의 3 (농업산학협동기금) ①정부는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영농자간의 협동으로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산학협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③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8. 12. 5]

제1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8. 12. 5]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농사연구교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농사원, 농림부지역사회국, 농림부훈련원의 사업, 공무원 및 시설은 농촌진흥청이, 도농사원, 도산업국지역사회과 및 도의 시험 연구사업, 지도사업, 수련사업을 담당하는 일체의 기관의 사업, 공무원 및 시설은 도 농촌진흥원이, 서울특별시, 시, 군의 농사교도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공무원 및 시설은 당해농촌지도소가 각각 승계한다.

## 부 칙 <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63. 12. 17]

부 칙 <66. 12. 27>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9.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 1.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①생략

부 칙 <78.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정 부 조 직 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1. 4. 8]

제 2 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부·처·청 및 국(외국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89. 12. 30>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 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다만, 내무부의 민방위업무담당보조기관은 본부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90. 12. 27>

제 3 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 (농림수산부)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개정 86. 12. 20>

②농림수산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 <개정 81. 12. 31, 86. 12. 20>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개정 86. 12. 20>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 4. 8>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신설 86. 12. 20>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86. 12. 20>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

치법 · 지방전매관서설치법 · 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 · 영림관서설치법 · 지방 건설관서설치법 · 지방교통관서설치법 · 지방체신관서설치법 · 공보관설치법 · 출입국관 리법중 제76조 · 행정법중 제2조제1항 · 소년원법중 제4조 ·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 제3항 및 제4항 ·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 · 제3항 및 제4항 · 보건소법중 제2조 ·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 검역법중 제3조 ·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 지방자치법중 제150조, 제151조 및 제152조의2 · 해양경찰대설치법 ·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록 4】**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1973. 8.16 대통령령 제 6808호 (1991. 2. 1. 폐기됨) 개정 1976. 12. 31 대통령령 제 8388호
---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설치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농촌진흥사업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도농촌진흥원)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농촌진흥원을 둔다.

②도농촌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2급갑류 또는 2급을류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농림직군의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76. 12. 31 대령 8388>

③도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군농촌지도소) ①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②농촌지도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군의 소장은 3급갑류, 기타시의 소장은 3급을류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76. 12. 31 대령 8388>

③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촌지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

④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도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도농촌진흥원, 서울

**【부록 5】**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도) 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농정국·수산국(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우에 한한다). 산림국(강원도의 경우에 한한다)·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경기도의 경우에 한한다). 건설도시국(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경우는 건설국과 도시국으로 한다).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산업경제국·감귤특작국·관광문화국·개발국 및 소방본부를 두되, 산업경제국은 다른 도의 농정국에 속하는 사무(농수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와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감귤특작국은 감귤·특수작물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광문화국은 관광·운수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개발국은 지역개발·건설 및 도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4. 5. 16>

②기획관리실은 도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투자심사·감사·통계·공보,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민방위(제주도의 경우에 한한다) 및 비상대책(제주도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1. 7. 15, 93. 7. 16, 94. 5. 16>

③내무국은 서무·보완·지방행정·행정구역·인사·새마을·선거·국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생활체육·문화·예술·지방세·세외수입·지적(제주도의 경우에 한한다). 기부금품통제, 금융·세무조사·회계·결산·영선·재산관리·처분 및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4. 5. 16>

④삭제 <93. 7. 16>

⑤보사환경국은 의무약무·환경보호·보건·위생·구호 및 후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1. 7. 15, 94. 5. 16>

⑥가정복지국은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1. 7. 15>

⑦농정국은 농산·양정·축산·잠업·수산(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우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농어촌개발·농산물유통·농지·농지개발·수리 및 산림(강원도의 경우는 산림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4. 5. 16>

⑧ 및 ⑨ 삭제 <94. 5. 16>

⑩삭제 <93. 7. 16>

⑪수산국은 어정·수산자원의 조성 및 생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기타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운수 및 노동에 관한 사무(경기도의 경우는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분장한다. <개정 92. 1. 31, 94. 5. 16>

⑭교통관광국은 교통·운수·차량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92. 1. 31>

⑮건설도시국은 상·하수도, 건축·주택·도시계획·공원·하천·방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건설기계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 지원·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1. 7. 15, 93. 7. 16, 93. 12. 31>

⑯건설국은 건축·주택·하천·방재, 건설기계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91. 7. 15, 93. 12. 31>

⑰도시국은 상·하수도, 도시계획, 공원,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 수도권정비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3. 7. 16>

⑱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2. 3. 28>

⑲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92. 3. 28>

제 4 조 (과등의 설치) 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장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소방본부 및 도 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 <개정 91. 7. 23>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원의 증원 및 소관사무의 폐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3. 7. 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실장·담당관·본부장·국장·과장) 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또는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보한다. <개정 92. 3. 28>

③국에 국장,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 및 감사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지방소방감 또는 소방정·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91. 7. 23, 92. 3. 28>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복지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여성·노인복지업무와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92. 3. 28, 93. 7. 16>

### 제 3 장 지방농촌진흥기구

제 6 조 (도 농촌진흥원)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x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둔다

②도 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도 농촌진흥원에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2. 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

3. 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

④도 농촌진흥원의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농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91. 7. 15>

⑤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작목시험장을 두되,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92. 1. 31>

제 7 조 (직할시·시·군 농촌지도소) ①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시장·시장·군수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②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되,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촌지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

④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 8 조 (공무원의 정원) ①직할시 및 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도 농촌진흥원 및 직할시 농촌지도소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내지 별표 1-14와 같다.

②시·군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농촌지도소 정원을 포함한다)은 별표 2 내지 별표 2-9와 같다.

③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의 소방서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④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1. 7. 1>

⑤인천직할시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94. 2. 28>

제 9 조 (정원의 배정) ①직할시 및 도의 하부조직별 정원의 배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별 정원의 배정은 당해 도지사가 행한다.

②직할시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단과대학별·학부별·학과별 정원의 배정은 대학 설치기준령 제3조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직할시장이 행한다. <신설 94. 2. 28>

제 10 조 (보고) ①직할시장과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의 배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때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과 도지사로부터 정원배정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장 지방공무원교육원

제 11 조 (직무) 5급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시장 및 도지사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직할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외의 자에 대하여도 그의 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2 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교학과를 둔다.

②교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 (공무원의 정원) ①교육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공무원의 부·과별 정원배정은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③교육원에는 제1항의 공무원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외에서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원내 6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록 6】**

**소속 기관 직제 사례**

■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기관) ①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소속하에 국립농산물 검사소, 농업공무원교육원·국립동물검역소·국립농업자재검사소·국립종축원·국립검사소·국립종자공급소 및 국립식물 검역소를 둔다.

②농림수산부 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농수산통계사무소를 둔다.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기관)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연구소·시험장 및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을 둔다.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기관) ①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임업연수원 및 산림 항공관리소를 둔다.

②산림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영림서를 둔다.

## ■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기관) ①수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소속하에 국립수산진흥원·국립수산물 검사소 및 수산공무원교육원을 둔다.

②수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소속하에 어항사무소를 둔다.

제 29 조 (어촌지도소) ①수산업에 관한 어민지도업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원장소속하에 어촌지도소를 둔다.

②어촌지도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어촌지도관 또는 어촌지도사로 보한다.

③어촌지도소장은 진흥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어촌지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록 7】**

**보 건 소 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3 조 (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명칭사용금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6 조 (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정신보건·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제 7 조 (시설이용)** 보건소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수수료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9 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설 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로 하고, 매년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한다.

제10조 (보고) 보건사회부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건소법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보건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건소의 설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를 말한다. 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제 3 조 (소장) ①보건소에 소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 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상시 근무할 의사를 두어야 한다.

③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 4 조 (공무원)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약무·보건·간호·병리검사·위생지도·보건통계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과 기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중 의료인·약사·의료기사등 자격의 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배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5 조 (보건의료원의 설치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건지소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관리 및 보건의료시범사업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 (지소장) ①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내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 8 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타인으로부터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받아 실험·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 이 영에 정한 것외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원의 설치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부록 8】**

**농산물검사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의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 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67. 4. 14>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곡류·서류·특용작물류·잠견류·과실류·채소류·고공품류·종묘류·화훼류·농산통조림 및 기타 농산물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3. 12. 29>

[전문개정 73. 2. 26]

제 3 조 (검사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6. 4. 14, 73. 2. 26, 83. 12. 29>

1. 정부에서 수매하는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농산물
2.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용농산물
3. 수출농산물·수입농산물 및 수입후 이를 가공한 농산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삭제 <83. 12. 29>
5. 농업단체에 의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6. 기타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② 농산물의 소유자 또는 수매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수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67. 4. 14>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산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67. 4. 14, 83. 12. 29>

1.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량 또는 중량에 미달할 때
2. 특별한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소량의 농산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조사 또는 학술의 연구에 공하거나 전람의 목적 또는 상품견본으로 수출입할 때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면제를 받은 상품견본으로서 해외에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견본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67. 4. 14, 83. 12. 29>

제 3 조의 2 (거래의 제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농산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3. 12. 29>

[본조신설 73. 2. 26]

제 4 조 폐지 <73. 1. 15>

제 4 조의 2 (검사의 위탁) ① 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 업무의 일부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3.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단체가 검사한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는 당해 검사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73. 2. 26]

제 5 조 (검사장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는 검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제 6 조 (검사항목) 농산물의 검사는 종류, 명표, 용중량, 포장 및 품위등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83. 12. 29>

제 7 조 (검사규격) ①농산물의 검사규격기준은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 12. 29>

②제1항의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검사방법) 농산물의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73. 2. 26]

제 9 조 (검사공무원) ①농산물의 검사는 농산물검사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검사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7. 4. 14>

③검사공무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농산물을 검사하지 못한다.

④검사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개정

김재환

광명시 농촌지도소 지도사

**질문자:** 경기도 광명시 농촌지도소 김재환 지도사

지도사도 계급이 있는가?

**질문 1:** 신설시의 경우 농촌지도소가 없고 종전관할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농촌지도 상담소가 있다. 설치근거 법규정은?

**답 변:** 단일 호봉제에도 임용예정직위와 공무원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당계급이 각각 있다.(총무처 예규 근거) 공무원 개인에게 해당되는 상당계급은 내무부에서는 인정하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선될 과제이다.

**답 변:** 신설시의 경우 반드시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어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미설치되고 대안으로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과의 협의(행정절차)에 의거 잠정적으로 설치한 지도기관이 있다.

**질문 3:** 농촌지도소가 자치단체소속이 되고 국가직 지도공무원이 지방직이 되면 시험연구 사업과 지도사업의 관계가 단절될 것으로 본다. 연계방법이 있는가?

따라서 신설시에서 농촌지도사업 소요경비를 부담금으로 하여 관할 농촌지도소에 지원 집행하여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

**답 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중앙기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앞으로 법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농촌진흥청 연구실적이 자치단체 지도사업에 반영된다.

**질문 2:** 지도사의 경우 15년이 경과되면 지도관 대우 발령을 받는다.